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2.1.13.부터 시행된 전부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발맞추어, 인용 법조문 변경 등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2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3조)
- 라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4조)
- 마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5조)
- 바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6조)

- 사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7조)
- 아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및 같은 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법조문 삭제 (안 제8조)
- 자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9조)
- 차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0조)
- 카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1조)
- 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2조)
- 파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3조)
- 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4조)
- 거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5조)
- 너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6조)
- 더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7조)
- 러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8조)
- 머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19조)

버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20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
(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·자구 변경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2.24.)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
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6조의2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를 “제13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

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2제4항 및 제6조”를 “제7조제4항 및 제9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를 “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5조, 제26조 및 제66조의3”을 “제19조, 제32조 및 제78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”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8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”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7조, 제139조”를 “제154조, 제156조”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6조, 제139조 및 제144조”를 “제153조, 제156조 및 제161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제13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2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과 구역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----- ----- ----- -----.
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,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7조제4항 및 제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등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8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, 제26조 및 제66조의3,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제19조, 제32조 및 제78조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·② (생략)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·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4조(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9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0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 「지방자치법」 제148조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1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1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·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 ④ (생략)	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1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, 제13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154조, 제156조 ----- ----- ----- -----.

1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153조, 제156조 및 제1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8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기금의 설치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 ② (생략)	제40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19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61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20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</u>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 개선, 운영의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
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변경 등 일부개정이므로,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사유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조성원 (☎ 3153-8526)